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5.



박 종 길 의원

제안 설명서

제안자: 박종길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달서구 구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주차단위구획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주차구획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소지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서 이동하여 주차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5월 2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박종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923057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3. 5. 26.
발 의 자: 박종길, 황국주, 박정환
남현주, 정순옥, 박왕규
최홍린

1. 제안이유

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달서구 구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)
- 나. 구청장이 주차단위구획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주차구획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소지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- 나. 비용추계: 미첨부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유공자”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본인을 말한다.
2. “우선주차구역”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.
3. “공영주차장”이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등) ① 구청장은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한다.

② 우선주차구역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

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.

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공영주차장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,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제5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(이하 “국가유공자증 등”이라 한다)를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위반차량 조치)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

1. 바닥면 도안



2. 안내표지판 도안



관계법령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